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7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이영실, 강동길, 곽향기,
김경훈, 김성준, 김인제,
김재진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유진, 박춘선,
박철성, 봉양순, 송도호,
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희,
, 이병도, 이승미, 이용균,
이원형, 임규호, 임종국,
전병주, 정준호, 최기찬,
최재란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시장은 도시공원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책무가 있는바, 이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”를 “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”를 “자유롭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, 제5항 및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”을 “있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유지·관리”를 “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놀 권리, 쉼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<u>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, <u>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</u>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·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,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<u>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</u>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(이하 “놀이시설”이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놀이환경 조성</u> ----- ----- <u>성에 관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자유롭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있도록</u>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라 한다)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
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---- 위
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
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---.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책무)제5항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책무)제5항 중 “유지·관리”를 “정비”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할 수 있으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

추계분석관 김 지 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